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P4구역(HC3,HO3블록) “세종 리더스포레”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 공급개요 및 일정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2-4생활권 P4구역(HC3,HO3블록)
- 규모 : HC3블록 343세대, HO3블록 845세대 총 1,188세대

## ▶ 일정 계획(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17. 12. 06(수)	<a href="http://www.sejongforet.com/">http://www.sejongforet.com/</a>
모델하우스개관	2017. 12. 07(목), 10:00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b>접수일자</b>	<b>2017. 12. 11(월), 10:00~14:00까지</b>	<b>건본주택 방문접수(인터넷 청약접수 불가)</b>
<b>추첨일자</b>	<b>2017. 12. 11(월), 16:00부터</b>	<b>건본주택(신청접수로 인한 시간변경 가능)</b>
당첨자발표	2017. 12. 13(수)	당사 건본주택에 게재
동호수 발표	2017. 12. 21(목)	당사 건본주택에 게재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자격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①항에 3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급 대상에 포함되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단, 철거주택 소유자인 경우 청약통장가입 요건 등 일부 항목적용 배제)

###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참조).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가능(노부모특별공급 세대주 한정)  
 (세대주가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가 청약시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확인대상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부적격당첨자로 처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7.12.06.)**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지역별 예치금액			
구 분	세종시 / 일반시군	서울시, 부산시	기타 광역시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5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하나, 추첨일의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추첨 순서를 변경 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노부모부양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적용됨.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 신청시 구비서류

### ○ 특별공급 신청시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신청서 등	• 신청일에 신청장소(건본주택)에 비치
청약통장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중소기업근로자, 군인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신청시는 본인의 신분증 제출,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인감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용 1통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날인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비 고
위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 비치)
신청자 인감증명서	• 특별공급 신청 위임용 1통
신청자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날인
대리신청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17.12.11.(월)10:00~14:00까지)에 건본주택(세종시 대평동 264-1 세종 리더스포레 모델하우스)에서 신청 접수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임대조건, 임차권 양도, 전대금지,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2017.12.06(목)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홍보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12.06(예정) 현재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종 리더스포레' 특별공급 배정세대

### ○ HC3블록(4세대)

구분	대상세대	84A	84B-1,2	84D	84F			
중소기업	4	1	1	1	1			

### ○ HO3블록(8세대)

구분	대상세대	84A	84B	84B-1	84C	84D	84E	84F
중소기업	8	1	2	1	1	1	1	1